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2347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대근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6. 10. 31. 체결된1)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C에게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의 1/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7. 1. 10. 접수 제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주식회사 D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94452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1. ‘피고는 원고에게 32,73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7. 5.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고, 같은 해 8. 27.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

1) 별지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아버지 E의 소유였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F, 피고, G, H, C 등 5인의 자녀가 있었다.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6. 10. 31.경 이 사건 1 부동산은 피고가 단독 상속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은 피고와 G가 1/2씩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 10.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G 앞으로(각 1/2지분) 각 2013. 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1 부동산은 2019. 10. 1. 피고로부터 제3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매매가액 3,400만 원), 2021. 4. 16. 다시 다른 제3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매매가액 4,900만 원).

다. C의 무자력

위 분할협의 당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1/5)을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기하여 이전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배상을, 이 사건 2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등기부에 2017. 1. 10. 피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서 등기원인이 2013. 2.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2))의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일자는 2016. 10.

31.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 처분문서의 기재와 같이 2016. 10. 31.경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본래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으로, C은 2016. 8. 18.경 이미 연체 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그 후인 2016. 10. 31.경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자력 상태였던 C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자신의 1/5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2 부동산의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1 부동산은 사해행위

이후 피고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 부동산의 2021. 4. 16.경 가액이 4,900만 원이므로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5지분의 가액은 980만 원이고, 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동일한 것으로 추인되며, 위 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021. 7. 23.까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69,019,173원이다)에 미치지 못함은 명백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1, 2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 1/5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6. 10. 31.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98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는 C에게 자신의 1/2지분 중 C의 1/5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허명욱

[별지목록 1]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대 304 m²

2.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9.24 m²

- 이 상 -

[별지목록 2]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하천 2311 m²

2.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답 846 m²

3.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 1782 m²

4.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 393 m²

5. 토지의 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 264 m²

(피고 의 2 분의 1 지분)

- 이 상 -

1) 등기부 상 등기원인일자는 2013. 2. 27.이다.

2) 2019. 6. 21. 등기예규 제1675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으나, 등기예규 제1675호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